

의안번호	제2831호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의결 사항	
----------	--

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4. 8. 27.

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283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8. 27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국공립어린이집(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) 위탁기간(2020. 2. 24. ~ 2025. 2. 23.) 만료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 운영과 이용 아동의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 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위탁근거

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제2항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나.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)
- 다. 「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」 제12조 및 제13조
- 라.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

3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시설명	현원장	소재지	규모(m ²)		정원	교직원수	비고
			연면적	층수			
고성보듬 이나눔이 어린이집	허미경	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-18	655	지상2	99명 (현원 78명)	20명	

나. 위탁개요

- 위탁 운영기간: 2025. 2. 24. ~ 2030. 2. 23.(5년)
- ※ 기위탁내역: 2015. 2. 24. ~ 2020. 2. 23./2020. 2. 24. ~ 2025. 2. 23.
- 위탁방법: 재위탁(보육정책위원회 심의)
- 위탁내용: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

다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국공립어린이집 지원

연도	인건비 지원	비고
2024년 ~	- 원장, 영아반보육교사 80% - 유아반 보육교사 30% - 조리원 100%	

- 어린이집 지원(공통)

지원구분	지원내용	비고
인건비	- 보조·연장보육전담교사: 1인 월 1,068천 원 - 인건비(자체)사업: 월 1,110천 원	
운영비	- 차량운영비: 월 200천 원 - 교재교구비: 연 1,000천 원 - 누리과정(3~5세)운영비: 1인 55천 원(월) - 5세 추가보육료: 1인 50천 원(월) - 안전보험료: 1인 2,570원(연간) - 영유아 급간식비: 1인 20천 원(월)	

라. 위탁조건

- 위탁자는 영유아보육법, 운영지침,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
- 위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
-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
- 원장 65세,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,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원 중단

4. 적정성 검토 결과

가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-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필요

나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- 기존 운영권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의 지원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

다. 경제적 효율성

- 기존 어린이집에서 활동중인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,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콘텐츠 활용 및 인력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

라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- 어린이집 평가제 우수어린이집(국가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영역 기준 충족) 및 열린어린이집 선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 품질 향상 및 보육의 질 개선 효과

마. 성과 측정의 용이성

-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(3년)를 통해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확보 및 성과 측정 용이

바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- 보조금의 정산, 예·결산 정보공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, 평가등급제를

통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

사. 그 밖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필요

5. 향후 추진계획

가. 2024. 10. : 재위탁 신청서 접수

나. 2024. 11. : 1차 사전심사 및 자료 검토

다. 2024. 11. : 면접심사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사

라. 2024. 11. : 재위탁 계약 및 위탁 계약증서 발급

붙임 1.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추진계획 1부.

2. 관련법령 1부.

등록번호	교육청소년과-23014
등록일자	2024. 8. 21.
결재일자	2024. 8. 21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보육돌봄 담당	교육청소년과장	행정복지 국장	부군수	군수
최미혜	김민정	천미옥	최낙창	박성준	이상근
협조자					



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추진계획(안)

요 약

- 재위탁 대상: 고정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
- 재위탁 사유: 위탁약정 기간만료(20. 2. 24. ~ 25. 2. 23.)
- 재위탁 기간: 2025. 2. 24. ~ 2030. 2. 23.(5년)
- 추진방법: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한 재위탁 평가 및 심사 후 결정



고 성 군
[교육청소년과]

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추진계획(안)

- 국공립 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(2025. 2. 23.)일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에 대한 재위탁 방식으로 관련 제반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

I 관련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제2항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)
- 「고성군 영유아보육조례」 제12조 및 제13조
-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

II 위탁개요

재위탁 대상

시설명	소재지	건립일	규모(m ²)		정원	교직원수	비고
			연면적	층수			
고성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	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-18	13.1.29.	655	지상2	99명 (현원 78명)	20명	

현 위탁체(자)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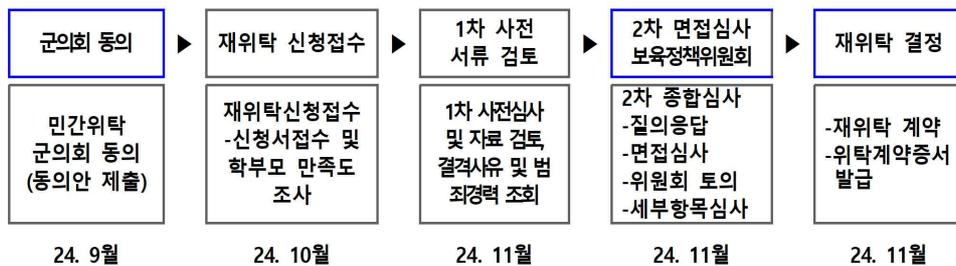
시설명	원 장	위탁운영체			위탁기간
		위탁체명	대표자	소재지	
고성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	허미경	개인	허미경	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-18	2020. 2. 24. ~ 2025. 2. 23.

- 재위탁 사유 : 위탁약정 기간만료(2025. 2. 23.)
- 재위탁 기간 : 2025. 2. 24. ~ 2030. 2. 23.(5년)

□ 재위탁 심사

- 심사기준 :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기준 5개부분 평가(보건복지부 심사기준표)
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
3 운영체의 운영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5 운영체의 재정능력
- 심사방법 :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재위탁 평가·심사 후 결정

□ 재위탁 추진절차



Ⅲ 세부추진계획

□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

-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: 2024. 9월 임시회

□ 재위탁 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4. 10월 중(재위탁신청 포기 시 변경위탁(공개모집)으로 추진)
- 제출서류: 위탁신청서, 위탁체 관계서류, 어린이집 운영 및 사업실적, 원장 관계서류,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등
- 재정능력 관련서류는 2024. 10월 말 기준으로 접수(잔액증명은 신청일 전일)

□ 학부모 만족도 조사

- 기 간: 2024. 10월 중
- 대 상: 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이용 아동 학부모
- 조사방법: 설문지를 통한 오프라인 조사
- 어린이집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대상 설문지 배부

문서관리카드교육청소년과-23014 3/5

□ 재위탁 심사

- 기 간: 2024. 11월 중
- 심사방법: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재위탁 평가·심사 후 결정
- 심사기준: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기준 5개부분 평가(보건복지부 심사기준 표)

심사항목(5개부분)	점수(100점)	세부항목(11개항목)
1. 어린이집 운영계획	25	-보육사업계획 -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계획 - 예산의 적절성
2.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	30	-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등 - 영유아보육법 등 이해수준, 공모사업 추진실적 -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
3. 운영체의 운영실적	30	-시설운영 관리 -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-회계관리의 적절성
4. 운영체의 공신력	10	-운영체의 도덕적·법적 건전성
5. 운영체의 재정능력	5	-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

- 심사방법 및 결정
 - 위탁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자의 PPT설명을 듣고 심사기준표에 의거 위원들이 심사
 - 심사기준표에 의한 위원별 점수를 합산, 평균점수 80점 이상이면 재위탁 결정
 - 위원의 자의적 심사 방지를 위해 개별 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
 -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(공개모집)으로 추진

□ 고성군보육정책위원회 개최

- 일 시: 2024. 11월 중
- 장 소: 군청 중회의실
- 참석대상: 고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3명

□ 위탁 계약 체결: 2024. 11월 중

- 재위탁 기간: 5년(2025. 2. 24. ~ 2030. 2. 23.)

문서관리카드교육청소년과-23014 4/5

IV**기대효과**

-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(자)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도모

붙임 관련법규 1부. 끝.

□ 영유아보육법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, 2023. 12. 26.>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 <개정 2008. 1. 17., 2011. 6. 7., 2011. 8. 4., 2018. 12. 11., 2020. 12. 29., 2023. 12. 26.>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6. 7.>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, 2011. 8. 4., 2023. 12. 26.>[전문개정 2007. 10. 17.][제목개정 2011. 6. 7.]

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) ①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1. 12. 8., 2024. 6. 27.>

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1. 12. 8., 2024. 6. 27.>

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)
3.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4.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5. 어린이집 운영계획서(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)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9. 1., 2024. 6. 27.>

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1. 12. 8., 2024. 6. 27.>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

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. <신설 2010. 7. 9., 2012. 8. 3.>

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0. 7. 9., 2011. 12. 8.>

⑦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0. 7. 9., 2011. 12. 8., 2022. 6. 22., 2024. 6. 27.>

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,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0. 7. 9., 2011. 12. 8., 2024. 6. 27.>

1. 변경 사유서

2.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,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0. 7. 9., 2011. 12. 8., 2024. 6. 27.>[전문개정 2009. 7. 3.][제목개정 2011. 12. 8.]

□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22.12.27. 조2767>

1.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2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3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[제목개정 2022.12.27. 조2767]

□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

제12조(위탁운영)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1.19. 조 2090><개정 2017. 8. 3. 조 2353>

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

제13조(위탁계약)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, 다시 계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1.19. 조 2090>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

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. <개정 2012.11.19. 조 2090><개정 2017. 8. 3. 조 2353>

④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 가액에 해당되는 보험(화재보험)을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,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<개정 2012.11.19. 조 2090><개정 2017. 8. 3. 조 2353>